

#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52
----------	-----

제출연월일 : 2007. 10. 2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을 인용한 관련법률 규정이 삭제되고 다른 법률에 신설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범위 등을 인용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인용 법령을 정비함(안 제2조제2항 및 별표 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사항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3)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14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중 “각 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제2조제3항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8조제8항중 “법”을 각각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명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를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중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를 각각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제외한다)중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3) 다음의 시설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나)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다)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4)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7)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설치 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p>(8)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5만㎡이상 30만㎡ 미만인 것</p> <p>(9)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전), 그 밖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전</p>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p>(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전</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다. 에너지 개발	<p>(1)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사업중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5km이상 10km 미만 인 것</p> <p>(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 인 것</p> <p>(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중 저장용량이 5만kl이상 10만kl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p> <p>「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p> <p>「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전</p>
라. 도로의 건설	<p>「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 사업중 다음 사업</p> <p>(가) 2km이상 4km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에서는 폭25 m 이상으로서 도로 구역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이 포함 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 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p> <p>(나)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 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의 허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p>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p>	<p>「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 길이로 5km 이상 10km 미만인 것</p>	<p>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다만,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전</p>
<p>바. 관광단지의 개발</p>	<p>(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면적의 합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전(관광숙박업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전</p> <p>「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사. 산지의 개발	<p>(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p> <p>(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인 것</p> <p>(나) 그 밖의 사업중 산지전용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 인 것</p> <p>(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사업중 노선의 총 길이가 4km 이상 8km 미만인 것</p>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같은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계획의 확정전)</p> <p>「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임도 설치전</p>
아. 체육 시설의 설치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중 총용지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인 것</p> <p>(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미만 인 것</p> <p>(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 인 것</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전,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p>「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p> <p>(가)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또는 매립용적이 165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또는 매립용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p>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전, 폐기물처리업외의 경우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전
차.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1만㎡ 이상, 2만㎡ 미만인 것,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이내에서는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전,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 비고 :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 나.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 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 인 때  
다.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 신 ·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5항 및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p> <p>1. (생략)</p> <p>2. <u>자연재해대책법</u>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u>재해응급대책사업</u></p> <p>3. (생략)</p> <p>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u>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비고 4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u>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u>」 -----</p> <p>-----</p> <p>-----</p> <p>-----</p> <p>-----</p> <p>-----</p> <p>-----</p> <p>-----</p> <p>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각</p> <p><u>호의 어느 하나</u> -----</p> <p>1. (현행과 같음)</p> <p>2. 「<u>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u>」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u>응급조치를 위한 사업</u></p> <p>3.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 「<u>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u>」 -----</p> <p>-----</p> <p>----- 「<u>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u>」 -----</p> <p>-----</p>

현 행	개 정 안
<p><b>제6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 (생략)</b></p> <p>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또는 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b>제14조(구성 등) ① (생략)</b></p> <p>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분의 2이상은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b>제18조(사업자의 의무) ① ~ ⑦ (생략)</b></p> <p>⑧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등은 별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b>제6조(평가서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b></p> <p>②----- ----- -----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 -----</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14조(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b></p> <p>②-----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b>제18조(사업자의 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b></p> <p>⑧-----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p>

< 현 행 >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p>(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3) 다음의 시설에 관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나)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다)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4)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대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7)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설치 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전</p> <p>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p> <p>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p> <p>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p>(8)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5만㎡이상 30만㎡ 미만인 것</p> <p>(9)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공사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전), 그 밖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하수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인가전</p>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p>(1)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3)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전</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다. 에너지 개발	<p>(1)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사업중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5km이상 10km 미만 인 것</p> <p>(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 인 것</p> <p>(3)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중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 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p> <p>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p> <p>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유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후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승인전</p>
라. 도로의 건설	<p>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중 다음 사업</p> <p>(가) 2km이상 4km미만의 신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폭 25 m 이상으로서 도로구역에 동법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나)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p>	<p>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p>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p>	<p>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동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 길이로 5km 이상 10km 미만인 것</p>	<p>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다만,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전</p>
<p>바. 관광단지의 개발</p>	<p>(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4)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면적의 합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동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전(관광숙박업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전</p> <p>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p> <p>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u>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전</u></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사. 산지의 개발	<p>(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p> <p>(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인 것</p> <p>(나) 그 밖의 사업중 산지전용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 인 것</p> <p>(2)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사업중 노선의 총길이가 4km 이상 8km 미만 인 것</p>	<p>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의 확정전)</p> <p>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산림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임도 설치전</p>
아. 체육시설의 설치	<p>(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중 총용지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인 것</p> <p>(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미만 인 것</p> <p>(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 인 것</p>	<p>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p> <p>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4) <u>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u>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청소년기본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차.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p>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시설의 설치사업</p> <p>(가)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또는 매립용적이 165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또는 매립용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p>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제출전, 폐기물처리업외의 경우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전
차.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 구역에서는 1만㎡ 이상, 2만㎡ 미만인 것,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 이내에서는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전,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동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 비고 :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 나.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 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 인 때  
다.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개정안>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제2조제2항 및 제6조제3항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p>(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제외한다)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3) 다음의 시설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나)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다)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4)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7)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설치 공사중 부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p> <p>「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p> <p>「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p>(8)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15만㎡이상 30만㎡ 미만인 것</p> <p>(9)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전), 그 밖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하수도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인가전</p>
<p>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p>	<p>(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전</p> <p>「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다. 에너지 개발	<p>(1)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설치사업중 345kV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5km이상 10km 미만 인 것</p> <p>(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kl 이상 10만kl 미만 인 것</p> <p>(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중 저장용량이 5만kl이상 10만kl 미만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 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p>	<p>「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p> <p>「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p> <p>「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전</p>
라. 도로의 건설	<p>「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 사업중 다음 사업</p> <p>(가) 2km이상 4km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에서는 폭25 m 이상으로서 도로 구역에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이 포함 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 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p> <p>(나) 2차로 이상으로서 5km 이상 10km 미만의 확장</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 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 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의 허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p>다. 하천의 이용 및 개발</p>	<p>「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 길이로 5km 이상 10km 미만인 것</p>	<p>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다만,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전</p>
<p>바. 관광단지의 개발</p>	<p>(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p> <p>(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p> <p>(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설치사업중 공원시설면적의 합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또는 같은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공원의 설치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전(관광숙박업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전</p> <p>「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전,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사. 산지의 개발	<p>(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p> <p>(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인 것</p> <p>(나) 그 밖의 사업중 산지전용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 인 것</p> <p>(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임도의 설치사업중 노선의 총 길이가 4km 이상 8km 미만인 것</p>	<p>「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같은 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계획의 확정전)</p> <p>「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한 임도 설치전</p>
아. 체육 시설의 설치	<p>(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중 총용지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인 것</p> <p>(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미만 인 것</p> <p>(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 인 것</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p> <p>「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p> <p>「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전, 개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전</p>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중 총용지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 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p>「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p> <p>(가)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또는 매립용적이 165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또는 매립용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p> <p>(나)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p>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전, 폐기물처리업외의 경우 같은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결정 또는 승인전
차.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1)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1만㎡ 이상, 2만㎡ 미만인 것,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km이내에서는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인 것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전,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산지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전,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안에 지정된 것에 한한다)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전

- 비고 :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중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등을 얻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2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얻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가.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
- 나.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 이어서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 인 때  
다.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당해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당해 개정규정에 의한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당해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15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 (응급조치) ①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긴급구조통제단 및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의 단장(이하 "지역통제단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계법령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방(水防)·진화·구조 및 구난(救難)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통제단장의 경우에는 제2호중 진화에 관한 응급조치와 제4호 및 제6호의 응급조치에 한한다.

1. 경보의 발령 또는 전달이나 피난의 권고 또는 지시
2. 진화·수방·지진방재 그 밖의 응급조치와 구호
3.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법 그 밖의 질서의 유지
4. 긴급수송 및 구조 수단의 확보
5. 급수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
6. 현장지휘통신체계의 확보
7. 그 밖에 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하수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1조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사업시행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 (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①석유정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 중 정제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윤활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의 양이 10만킬로리터 이하인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도로 또는 광장
- 나. 화단·분수·조각 등 조경시설
-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라. 그네·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마. 테니스장·수영장·궁도장 등 운동시설
- 바. 식물원·동물원·수족관·박물관·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사. 주차장·매점·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 아. 관리사무소·출입문·울타리·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자.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9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관리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9>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④ 제2항의 규정은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주택지·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를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소택지(沼澤地)

제9조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임도,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에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⑤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집 :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1. 국가는 2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 라목 내지 바목에 의한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국가는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7.27>

제47조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제48조 (수련지구조성계획)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7.7.27>

②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2007.7.27>

대전광역시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7. 11. 27

교육사회위원회

##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0. 29 대전광역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 10. 30

다.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11. 27)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환경정책과장 이병철)

### 1. 제안이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범위 등을 인용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인용법명을 정비함(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1).

###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을 인용한 관련 법률 규정이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 범위 등을 인용한 법률이 개정되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 사항은 없으나,

관련규정을 적기에 정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좀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